

정부 지출 이용에 대한 제한

뉴욕시 현장에는 공무원의 정부 자원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지역사회위원회 위원 또는 자문위원회의 유급 위원을 포함하여 뉴욕시의 모든 공무원, 공직자 또는 직원입니다.

어떤 제한이 적용됩니까?

공무원은 정부 자금 또는 자원(인터넷상의 명세서 포함)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특정 공직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특정 투표용지 국민 투표 질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장려하는 공개적인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타 제한 사항

선거 연도 중

선거 연도의 1월 1일부터 총선거일까지, 공직 후보자 또는 공직 선거 출마 예정자인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동거인은 정부 자원을 활용하여 유료로 수행되는 텔레비전 광고, 라디오 광고, 인쇄물 또는 전자(인터넷) 광고에 출연하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이전

예비 선거 및 총선거의 90일 이전부터 정부 자금 또는 자원을 인쇄 또는 전자 대량 우편 발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일반적으로 대량 우편 발송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량 우편 발송"이란 뉴스레터, 팸플릿, 정보 자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100개 이상의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문헌 또는 기타 소식지를 거주자 또는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¹ CFB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락은 후보의 지출 한도에 포함되는 현물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궐 선거의 경우, 제한 사항은 보궐 선거가 선언된 날부터 보궐 선거일까지 적용됩니다.

¹ §1136.1(1)(a)를 참조하십시오. §1136.1(4)에 따라, 캠페인 금융위원회는 이 요구 사항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

공무원은 인쇄 또는 전자 매체의 뉴스 보도, 토론회, 공교육 포럼에 참여하거나 이를 위해 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후 90일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우편 발송을 하는 경우 정부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²

- ◆ 예산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대표하는 의회 선거구, 자치구 또는 기타 지역 내의 개인에게만 발송되며, **집행 예산이 채택된 후 21일 이내에 발송되는 경우**. 공무원은 이 예외 사항에 따라 1회에 한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³
- ◆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광고 또는 기타 연락의 경우.**
- ◆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락의 경우.** 해당 연락은 대중에 대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과 관련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교육이나 정보(예: 특정 지역의 질병 발생 또는 범죄 증가) 이상의 연락이어야 합니다.
- ◆ **문의 또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전달하는 표준적인 연락의 경우.** 해당 연락은 문의 또는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어야 하며, 연락의 내용은 문의 또는 요청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 **공무원과 일반 대중 또는 선출직 공무원과 그 유권자 간의 통상적인 연락의 경우.** 연락이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CFB 직원은 우편물의 내용, 주제, 발송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합니다.
 - › 통상적인 연락에는 시간이 중요한 행사의 경우 연례 또는 반복적인 행사에 대한 광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전에도 동일한 행사를 광고하는 유사한 연락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연락은 통상적인 연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연락으로 간주되는 연락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독립 기념일 및 기타 민족/문화유산 기념일에 대한 광고.
 - » 전년도에 동일한 공무원이 주최한 적이 있는 축제 또는 행사에 대한 광고.
 - » 기존 월별 정기 업데이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포 목록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계류 중 법안 및 예정된 청문회에 대해 알리는 연락(해당 공무원의 과거 행동이나 업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현재 계류 중 사안이 중심 내용이어야 함).
 - »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법원 판결 또는 법률 수정에 대해 알리는 연락.
 - » 시간이 중요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예정된 타운홀 회의에 대한 알림 및 미리 알림.

² §1136.1(3)(a)를 참조하십시오.

³ §1136.1(2)(b)를 참조하십시오.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거 90일 이내에 정부 자원을 사용하여 배포하는 대량 우편물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 선거 관련, 선거 운동 또는 홍보 문구가 포함됨.
- ◆ 해당 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위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됨.
- ◆ 해당 공무원의 선거구 또는 해당 지역 외부로 배포됨.

위의 예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량 우편 발송에 정부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연락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시간이 중요한 특정 행사와 관련이 없는 계절성, 축하 및 기념 발표.
- ◆ 정책 보고서의 발표를 알리는 연락.
- ◆ 시간이 중요한 특정 사안과 관련이 없는 인쇄 또는 전자 뉴스레터.

전자 형식 연락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인터넷 콘텐츠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형식 연락은 § 1136.1(1)(e)에 따른 "대중 전달"의 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의 텍스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소셜 미디어 또는 네트워킹 사이트의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해당 공무원의 시 정부 웹사이트 이외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를 통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전자 통신을 주민 또는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헌장 § 1136.1(2)(b)에 따른 "전달(하기)"에 해당합니다.⁴

- ◆ 트윗, Facebook 상태 업데이트 및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게시물은 특정 계정이나 주소로 전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정부 자원이 선거 운동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선거 운동을 위한 별도의 Twitter 및 Facebook 페이지를 개설할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헌장 §1136.1](#)을 참조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고문 변호사인 Mark Griffin에게 (347) 404-8630번으로 전화하거나 mgriffin@nycctfb.info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해 주십시오.

⁴ 일반적으로 [자문 의견서 번호 2007-1](#)(2007년 2월 8일)을 참조하십시오.